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2년 3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22.(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3. 22.(화)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담당과장	이민우 과장(044-203-4210)	담 당 자	유상원 사무관(044-203-4203)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전략산업 거버넌스 구체화 -
- 긴급수급안정화 지원, 특성화대학 정원조정 등 근거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3.23일(수)부터 5.2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同 입법예고는 2.3일 공포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입법예고 되는 하위법령 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공포 이후 **업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성**, 전략기술 지정 등의 **요건·절차 명확화**, **정부의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였다.

❶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同 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등 **정부위원***과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된다.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정원장 등 및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外에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석 가능

○ 전략기술 지정 시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위원장) 및 산업부·기재부차관, 국정원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❷ 전략산업의 기반인 **전략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 개별적인 신청도 가능하고, 산업부장관이 매년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도 진행

❸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①생산계획 변경에 필요한 비용, ②국내우선공급 등에 따른 손실보전, ③운송·보관·비축·양도에 필요한 비용, ④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에 필요한 비용

❹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추가자료 작성 없이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보완·제출**하도록 하여 **연계를 강화**하였다.

* ①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 ②특화단지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③지역 주요산업과 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성, ④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

❺ 민간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內 회신해야 한다.**

* 법령 정비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상정 가능

○ 이 경우, 위원회는 ①규제개선 **신청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②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③**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다.

❻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경우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다.

* 산업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하며, 지정기준 및 절차는 별도 고시 예정

□ 산업부는 同 법 시행으로 국가·경제 안보 확보 및 업계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게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5.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붙임】 1.「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문
2.「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유상원 사무관(☎ 044-203-42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57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분쟁 등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선두권이나 안주해선 안 되고 초격차 경쟁력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과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8813호, 2022.2.3. 제정, 2022.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제8조)

나.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통계 작성 범위와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 규정함(안 제12조~제18조)

라. 긴급수급안정화조정 절차와 자료의 제출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제20조)

마.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21조~제24조)

바. 전략기술의 수출과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합병등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5조~제29조)

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와 전문인력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0조~제32조)

아.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지정 요건 및 절차,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주요 기준과 특화단지육성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33조~제36조)

자.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처리 대상 인·허가등 의제, 운영 지원, 입주기관 지원, 민원의 신속처리 등 특례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37조~제42조)

차.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기술개발사업 추진, 특별회계등의 종류, 규제개선의 신청·관리·감독,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3조 ~ 제50조)

카.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계약학과·특성화대학·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등의 지정 및 설치, 해외 우수인력 정보의 활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1조 ~ 제57조)

타. 전략산업등의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8조 ~ 제60조)

파.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1조 ~ 제6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유상원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4203
- 팩스 : 044-203-4722
- 이메일 : wow51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전화 044-203-4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5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분쟁 등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 선두권이나 안주해선 안 되고 초격차 경쟁력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과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8813호, 2022.2.3. 제정, 2022.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략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전략기술 수출승인신청서, 해외인수·합병등 승인신청서,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 해외인수·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 전문인력등 지정신청서 등 전략기술 보호와 관련된 각종 신청 및 신고의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제8조)

나. 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신속처리신청서, 임대료 감면 신청서 등 특화단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서식을 규정하고, 산업기반시설의 관리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9조~제12조)

다. 특성화대학,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등의 지정신청서 서식을 규정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을 구체화함(안 제13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유상원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4203
- 팩스 : 044-203-4722
- 이메일 : wow51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전화 044-203-4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